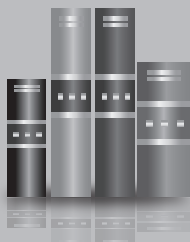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7호,
2012.8.22,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1348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책 수립시에 굴삭기 · 지게차 · 소독차량 등의 장비, 저장조 · 보호용구 등의 자재 및 소독약품 · 석회수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읍 · 면 · 동 · 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 ·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삭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헬멧 · 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 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을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운영

4의3.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제15조의2 중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여권번호”를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별표 2 제2호하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 2	100	200	500
거. 법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 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 3	100	300	300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8.23]
[대통령령 제24056호,
2012.8.22,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 등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축산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358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 검사결과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재검사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